

企業關係稅制 改正方向에 관한 研究

尹 桂 變

次>

序 言

1. 企業關係稅制의 改正方向
2. 稅率構造의 改善과 減免稅制의 축소
 ■ 통합 課稅의 公平化
 - (1) 稅率構造의 改善
 - (2) 最低稅率의 적용
 - (3) 輕減稅率의 적용
3. 投資促進을 위한 稅制
 - (1) 稅率의 引下
 - (2) 特別償却範圍의 擴大
4.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稅制
 - (1) 法人과 個人配當所得에 대한
 二重課稅의 調整
 - (2) 紙上配當稅의 폐지
 - (3) 公開法人에 대한 우대조치 持續
5. 企業會計의 존중
 - (1) 損益의 歸屬年度에 대한 稅務會
 計와 企業會計의 一致
 - (2) 資本的 支出와 收益의 支出

(3) 外換差損益의 評價

(4) 固定資產 取得에 대한 過大評價
 의 抑制

6. 法制定 精神에 맞춘 法規의 合理的 運用

(1) 外國納付稅額에 대한 稅額控除制
 度의 改善

(2) 個人事業을法人으로 전환할 때
 의 讓渡所得稅의 免稅

(3)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制度
 의 改善

7. 從業員 福利厚生 增進

(1) 從業員 福利厚生 支援에 대한 不
 當行爲 計算의 否認

8. 景氣變動에 대응한 稅制

(1) 法人稅 分納 許容

(2) 法人稅 中間豫納期限의 연장

9. 結 論

序 言

우리 經濟는 지난 20年間의 본격적인 成長을 토대로 하여 成長基盤을 굳히는 동시에 國際經濟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安定과 發展을 도모해야 할 時期에 직면해 있다. 世界經濟는 資源의 有限性에 따른 資源民族主義의 대두, 先進的 開發途上國家의 급속한 成長을 경계한 선진국에 있어서의 保護貿易主義의 대두, 成長과 工業化에 대응한 環境保全問題, 國際通貨秩序의 붕괴와 새로운 安定모색에 따른 通貨不安, 高金利政策과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世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註：本論文에서는 記述의 편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略號를 이용한다.

法・法：法人稅法 法・令：法人稅法 行令

所・法：所得稅法 所・令：所得稅法 行令

界經濟의 뚜렷한 活路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國內的으로는 國家安全保障이라는 기본적인 命題아래 國民의 所得이 급격하게 向上됨에 따라 消費生活의 質的인 改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製品 및 サービス에 대한 需要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高度의 工業社會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需要가 증대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급속한 工業化의 결과로 產業公害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意識構造面에서 教育과 所得水準이 向上되게 될 때 따라 인간다운 生活에 대한 自覺과 要求가 증대되어 所得隔差에 대한 不滿과 함께 所得再分配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現代國家에 있어서 經濟·社會의 발전을 위해서 政府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政府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投資財源의 調達과 조달된 財源의 적정한 投資配分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經濟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한 十數年間에 經濟開發에 따르는 방대한 財政需要를 충당할 수 있었던 租稅政策의 기여도는 상당한 것이었다.

한 나라에 있어서의 租稅政策은 資源의 最適配分이나 所得의 再配分, 經濟의 安定과 成長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국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租稅政策의 양상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租稅政策은 經濟·社會政策의 一環으로서 有機的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基本方向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租稅政策이 성공하려면 經濟政策과 社會政策의 선택이 經濟·社會的인 환경에 적합하여 政策目標와 與件이 調和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租稅政策은 目標가 不分明했거나, 狀況的 與件을 이해하지 못하여 과정의욕으로 나타나고, 또 이러한 결과를 糊塗하기 위해 미봉적인 수단에 급급함으로써 政策의 대상자인 國民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租稅政策 뿐만이 아닌 많은 政策에 있어서 “先施行 後修正”的 施行錯誤가 寬容되어 있는 바 이것은 政策目標가 長期的인 方向으로 구체적이고, 明確하게 설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計劃에 대비한 統制手段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미흡하게 될 때 따라 計劃上의 過濫이 문제를 일으키는 惡循環을 되풀이하고 있다.

흔히 先進國에서 施行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經濟·社會的인 與件을 분석하지 않은 채 導入되어 온 많은 制度와 政策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策目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法制度의 보장과 行政體制의 정비와 一般國民들의協力を 얻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租稅政策은 長期的인 方向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方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未來의 不確實性과 環境變化에 彈力的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施行錯誤와는 명백하게 区別되는 것으로 方向設定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된다.

本研究는 이러한 現行 稅制의 문제점을 企業과 관련된 法人稅法, 所得稅法, 租稅減免規制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定立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稅法이 租稅優先確保主義와 稅收增大를 위해 納稅者와 課稅者間에 마찰이 생긴데 비해 本章에서는 長期의 인 方向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納稅者保護를 우선으로 하되 이 論文이 卓上空論이 되지 않기 위해서 稅收를 縮少시키지 않는 代案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1. 企業關係稅制의 改正方向

우리나라 稅法이 內包하고 있는 政策目標는 매우 다양하다. 한 稅法內에 서로 다른 政策目標를 適用하게 하면서, 長期間동안 部分의으로 修正하여 왔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여 一般納稅者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各種 稅法間의 相衝과, 관련된 稅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一般納稅者가 받는 피해도 막대하리라고 예측된다. 企業과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法人稅와 租稅減免을 규제하기 위해서 租稅減免을 규정해 놓은 租稅減免規制法을 연결시킬 경우에는 더욱 斷片의이고 복잡해진다. 特定產業을 育成하기 위한 投資의 支援,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등 經濟政策과 社會政策의 配慮를 부문적으로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 大法人과 小法人에 적용되는 名目上 稅率과 實效稅率의 차이가 확대되었고, 의도하지 못했던 法人的 의사결정을 誘導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資金의 内部留保를 촉진하기 위해 설정되는 각종 준비금제도는 一定期間내에 다시 益金에 加算되어야 하기 때문에 一時의 法人稅 移延效果밖에 없고, 未來에 발생할 損失에 대비한다는 本來의 준비금제도의 성격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稅法 改正時마다 매년 準備金의 종류가 증가되어 왔다. 각종의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稅制誘因이 全體 企業에게 無差別의으로 적용되었다가보다 特定 產業 또는 企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歸屬者별로 減免의 특혜가 다르고, 課稅標準을 확보하기 위한 稅務會計의 우선은 企業의 財務의 健實性을 목표로 하는 企業會計原則을 무시하게 하고, 그 差異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稅務行政은 더욱 복잡해지고, 稅制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稅法은 條文數를 증대시키고 있다.

企業關係稅制의 合理的인 改正으로 資源을 보다 效率的으로 配分하는 經濟原理를 충실히

하면서 短期的으로는 當時의 經濟狀況을 감안하고, 長期的으로는 보다合理的인 稅制를 확립하기 위한 目標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企業關係稅制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企業의 資金調達, 資本市場의 育成方向, 國際資本交流 등 경제전반에 걸쳐서 稅制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企業關係稅制의 改正方向으로서는 첫째 稅率構造의 政策과 減免稅制의 축소로 課稅를 法人別로 公平하게 하며, 둘째 1978년이래로 계속된 景氣沈滯에 따라 沮喪된 企業의 投資意慾을 촉진하고, 세째 과거의 8.3措置 당시보다 약화된 기업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위해 資金의 内部調達을 強化하고, 네째 가능한 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를一致시켜 稅法을 단순화시키며, 다섯째 法規制定의 精神에 맞추어 既存 法令의 利用可能性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고, 여섯째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보다 중점을 두어 第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基本理念인 福祉社會에의 參與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本論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基本方向에 따라 이에 관련된 一部條文들을 事例로 들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2. 稅率構造의 改善과 減免稅制의 축소를 통한 課稅의 公平化

(1) 稅率構造의 改善

현행 法人稅率의 構造는 그 法人の 目的, 規模, 所得金額의 크기, 留保所得 여부, 內·外國法人의 區別에 따라 각각 稅率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體系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租稅減免을 규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租稅減免規制法이 時間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減免혜택을 받는 法인이 증가하여 名目稅率과 實效稅率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비해 實效稅率이 낮아지고, 減免所得이 점차 증대되어 法人稅 稅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租稅의 中立性과 稅收入의 彈力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法人稅率 구조는 단순화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租稅行政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課稅의 公平化를 위해서 歸屬者別 減免의 特惠는 축소되어야 한다.

法·法 第22條 ②와 ③에 규정되어 있는 公開法人에 대한 優待稅率의 適用은 證券市場의 육성을 위해 존재해 온 것으로 公開要件의 강화와 함께 優待稅率의 차가 좁혀져 왔다. 公開法人에 대한 要件규정에 따라 많은 租稅行政上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국세청이 매년 公開法人의 要件確認을 감독해야 하나 實質上으로 어렵다. 오히려 公開法人은 上場을 하게

되므로 上場法人에 대한 규정을 두고, 上場法人의 감독은 證券去來所나 證券監督院이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上場法人에 대한 규정은 證券去來法과 證券去來所의 上場審查規程에서 행하는 바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現재와 같은 7%의 차등세율이 公開法人으로의 轉換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이를 과감히 單一比例稅率로 統合하는 대신에 非公開企業이 上場企業으로 전환할 새로운 誘導裝置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法・法 第22條 ④에 규정되어 있는 非營利法人에 대한 優待稅率을 적용하는 경우도 이들이 행하는 收益事業이 一般法人을 영위하는 사업과 競合하는 경우가 많으며, 一般法人과의 경쟁에서 不公平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一般法人과 같이 單一比例稅率을 적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의 稅率보다 投資나 事業形態의 類型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法人自體에 대한 租稅의 公平性을 具現하고, 租稅行政面에서 단순해져 당국과 法人과의 租稅 마찰을 빚지 않게 된다(<表 1> 參照).

(2) 最低稅率의 적용

현행 法人稅制와 減免稅制에서 短期的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最低稅率制度이다. 稅率構造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減免稅額이 너무 높기 때문에 法人稅의 稅收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最低 25%를 基本稅率로 하여 差額에 대해서만 減免

<表 1> 法人課稅의 名目・實效稅率 比較

<美國>

(단위 : 美弗)

稅率 課稅所得	名目稅率		實效稅率 ¹⁾		
	法人稅	州法人稅	法人稅	州法人稅	合計
年 25,000以下	17.00%	9.60%	15.37%	9.60%	24.97%
25,000~50,000	20.00	9.60	18.08	9.60	27.68
50,000~75,000	30.00	9.60	27.12	9.60	36.72
75,000~100,000	40.00	9.60	36.16	9.60	45.76
100,000~	46.00	9.60	41.58	9.60	51.18

1) 州法人稅(California), 聯邦稅計算 州法人稅는 損金算入

<英國>

(단위 : 英파운드)

稅率 課稅所得	名目稅率	實效稅率	合計
年間利潤 6,000未滿	42.00%	42.00%	42.00%
60,000~100,000	42.00~52.00	42.00~52.00	42.00~52.00
100,000~	52.00	52.00	52.00

* Imputation制 채택, 年間利潤은 Gross-up

〈西獨〉

區分	名目稅率		實效稅率 ²⁾		
	法人稅	營業稅 ¹⁾	法人稅	營業稅	合計
留 保 分	56.00	15.00	43.48	13.04	56.52
配 當 分	36.00	15.00			

1) 各基礎團體의 稅率이 다를 경우上 15% 假定

2) 實效稅率의 計算

① 稅包含利益 중 30%가 配當, 營業稅는 法人稅 및 營業稅計算上 損金에 算入

〈佛蘭西〉

名目稅率	實效稅率
50%	50%

〈日本〉

所得區分	稅目別	法 人 稅	道府縣民稅	市町村民稅	事 業 所 稅	合 計
名目稅率						
年 350萬圓以下						
留 保 分		28.00%	1.46%	3.39%	6.00%	
配 當 分		22.00	1.14	2.66		
年350萬圓~700萬圓						
留 保 分		28.00	1.46	3.39	9.00	
配 當 分		22.00	1.14	2.66		
年 700萬圓超過						
留 保 分		40.00	2.08	4.84	12.00	
配 當 分		30.00	1.56	3.63		
實效稅率						
年 350萬圓以下		24.72	1.29	2.99	5.66	34.66%
年 350萬圓~700萬圓		24.03	1.25	2.91	8.26	36.45
年 700萬圓超		33.04	1.72	4.00	10.71	49.47

〈韓國〉 1980年度 現在

	公開法人	一般法人	平均稅率比率
5000萬~1억 원	29%	36.59%	公開法人 25.58%
20억 ~50억 원	28.28%	31.36%	一般法人 32.17%
50억 원 이상	22.40%		中小法人 29.47%

資料 : 小松芳名, 各國의 稅制度, 1980

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減免을 막고, 課稅의 公平性을 具現할 수 있다.

(3) 輕減稅率의 적용

이렇게 單一比例稅率을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中小企業에 대한 稅率의 설정문제이다. 事業을 法人形態로 운영하는 경우와 個人形態로 운영하는 경우의 稅負擔의 衡平을 고려해 보면 中小企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現行 稅率을 놓고 계산할 경우에 課稅標準이 1,500만원 이상이 될 때부터 法인이 有利해지기 시작한다(所得稅의 各種控除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賣出額 純利益率의 低水準을 고려해 볼 경우에 (1.5% 내외) 대부분의 中小企業이 課稅標準 1,500만원이내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納稅主體간의 課稅衡平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輕減稅率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輕減稅率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個人事業者가 法人으로 轉換하는 誘因이 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이러한 輕減稅率과 單一比例稅率과의 差異는 축소되어야 한다.

3. 投資促進을 위한 稅制

課稅의 公平性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企業負擔을 보다 輕減시켜 投資를 촉진할 수 있는 誘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經濟가 貿易에 의존하면 할수록 경쟁대상국인 外國의 法人稅制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法人稅制가 國제경쟁에 유리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稅率構造의 單純화와 減免稅制의 축소에 따라 증대되는 法人稅가 있다면 이는 法人稅率의 引下에 이용되어야 한다.

(1) 稅率의 引下

현행 法人稅率 중 最高稅率을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國家의 法人稅率과 비교해 보면 <表 2>와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法人稅率 自體의 最高稅率은 先進國에 비해서는 낮고, 경쟁대상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나 法人稅에 부가되는 防衛稅와 住民稅를

<表 2> 各國의 法人稅・最高稅率 比較

—配當分 課稅를 中心으로—

(單位: %)

國 別	韓 國	日 本	自由中國	싱가폴	말 래 이 지 아	美 國	英 國	西 獨	프 랑 스
法 人 稅 率	40 (53)	30 (45.63)	35	40 —	40 —	46 (55.6)	52 (52)	33.63 (51)	50 (50)

註: ① ()은 法人稅에 附加되어 課稅되는 各種 稅目의 稅率을 包含한 것임.

(예) 韓國→防衛稅, 住民稅包含, 日本→道府縣民稅 또는 市町村民稅, 事業稅包含.

資料: ① 日本 財政金融統計月報, 1980 8月號.

② 小松芳名, 各國의 租稅制度 1980.

고려해 볼 경우에는 先進國에 육박하는 높은 稅率로서 결국 國際競爭力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企業의 稅負擔輕減을 통해 經濟를 活性화하고자 法人稅率을 引下하는 추세에 있다. 美國은 1978年에 法人稅率을 48%에서 46%로 引下한데 이어 36%까지 引下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英國은 中小企業에 대한 輕減稅率을 42%에서 40%로 引下하고 있다. 그런데 先進國에 비해서 企業會計上의 利益과 稅務會計上의 課稅標準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稅率이라 하더라도 더욱 不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法人稅에 부가되어 있는 各種稅 때문에 實效稅率이 높은 현행세율을 경쟁대상국인 外國과 비교해서 낮추려면 法人稅의 最高稅率을 30%水準으로 낮추어야 할 것인 바 이렇게 될 경우 各種 附加稅率을 더할 경우에 實效稅率은 약 40%水準이 될 것이다.

(2) 特別償却範圍의 擴大

우리나라 經濟의 胫弱點은 貧弱한 資源과 低水準의 技術, 落後된 施設로서 이를 어떻게改善할 것인가가 經濟發展의 關鍵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技術開發과 資源確保, 落後된 設備의 改善를 추진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設備의 耐用年數를 조정하고, 物理的인 減價뿐만 아니라 機能的인 減價償却을 인정하여 特定條件에 맞춘 特別償却對象範圍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法·令 第51條의 6(研究·試驗用 施設의 特別償却)은 1回에 한하여 取得價額의 50%를 一時에 特別償却하게 하고 있으나 耐用年數는 事業別 固定資產의 耐用年數表를 따르고 있다. 研究·試驗用 施設은 機能的인 陳腐化가 매우 빠른 만큼 耐用年數를 보다 줄이던가, 이것이 어려우면 既存 減價償却率에 特定比率을 加算하는 方式으로 전환하여 減價償却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研究設備와 아울러 技術發展을 위한 民間研究所도 官公立研究所와 같이 우대하기 위해租稅減免規制法 第23條의 2, 第24條의 2에 규정하고 있는 技術用役業 대상에 民間研究所를 추가하고, 特定研究機關에 支給하는 出捐金이나 기타 研究開發費는 技術開發準備金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特定研究機關에 民間研究所를 추가한다(이 경우 民間研究所는 科學技術處의 審查와 監督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企業의 民間研究所에 대한 投資가 증대되고, 技術開發意慾이 높아지게 되며 아울러 企業의 競爭力を 培養하게 될 것이다.

또한 法·令 第38條의 移延資產에서 試驗研究費와 開發費가 株式發行費, 社債發行差金과 같은 移延資產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이것 역시 그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認定하고 收益이 생기면 益金으로 處理하게 되며 試驗研究의 의욕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은 人力開發을 위한 職業訓練所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3) 資源開發投資에 대한 우대

그리고 資源開發을 위한 投資에 대한 關係法規는 法·法 第12條의5(海外投資損失準備金)와 法·法 第12條의 6(採礦準備金)이 있는 바 海外資源은 農·畜·水·林產物과 鎳物로 广泛한데 비해 國內資源은 陸上 鎳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海底鎳物을 추가하고, 海外資源과 같이 國內資源開發에 대해서도 여러 資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같이 누리게 해야 할 것이다.

4.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稅制

1970년 이래 最惡의 상태에 놓여 있는 企業의 財務構造는 1980년 말 현재 製造業의 自己資本比率은 17.0%이고, 負債比率은 487.9%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1978년 이래의 景氣沈滯로 收益性이 악화되어 内部資金에 의한 資金調達은 限界에 부딪쳤으며, 外部資金調達市場으로서의 金融市場과 資本市場의 역할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企業의 財務構造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에는 稅制의 책임도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實質利子率은 企業歷史로 인하여 内部留保가 적은 企業의 경영자들은 負債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負債의 資本費用이 自己資本의 資本費用보다 낮은 상태에서 自己資本에 의한 增資나 内部留保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 法人과 個人配當所得에 대한 二重課稅의 調整

法人所得과 個人所得에 대한 課稅는 法人實在說에 따라 法人稅를 납부한 후의 配當所得에 대해 個人의所得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며, 法人間의 配當에 있어서도 法人稅를 납부하고 配當받은所得에 대하여 이를 다시 益金에 算入하여 과세함으로써同一所得에 二重課稅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法人間의 出資가 어려워지고, 株式의 資本費用이 負債의 資本費用보다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各國의 法人配當所得에 대한 課稅의 形態는 그 나라의 經濟環境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法人稅와 個人所得稅에서 별도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益金에 不算入 한다던가, 前段階에서 法人稅를 납부한 실적을 고려하여 一部를 益金에 算入하고 있다(<表 3> 參照).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法人間의 配當所得은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되 단지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所得金額만을 益金에 不算入하게 되어 있다(法·法 第15條 10).

그러나 이것은 機關投資者를 구별함이 없이 法人間의 配當에 있어서 上場法人에게서 받는 配當은 益金에 不算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配當에 대한 支給法人의

〈表 3〉各國의 配當에 대한 二重課稅 調整方式

	韓 國	美 國	英 國	西 獨	프 랑 스	日 本
調整方式	分離方式(配 當稅額控除)	分離方式(配 當所得控除)	法人稅加算 調整方式	法人稅加算 調整方式	法人稅加算 調整方式	配當輕課方式 配當稅額控除
法人 단계	法人稅率 40% 防・住包含 53%	法人稅率 46%	法人稅率 52%	留保分 56% 配當分 36%	法人稅率 50%	留保分 40% 配當分 30%
個人株主 단계에서 의 稅額 控除	受入配當의 15%를 稅額 控除 (非上場 法人의 配當 에 대하여는 3千萬원 까지 는 10%, 그 초과분은 5% 控除)	綜合課稅 (受 入配當中 100 \$까지는 공 제, 1981~82 年까지는 200 \$控除)	受入配當과 그의 3/7을 課稅所得으로 한 다음 受入 配當의 3/7을 算出稅額에서 공제	受入配當과 그의 36/64을 課稅所得에 算入한 뒤 受 入配當의 36/ 64을 算出稅 額에서 공제	受入配當과 그 1/2을 課 稅所得에 산 입한 뒤 受入 配當의 1/2을 산출稅額에서 공제	受入配當의 10%를 稅額 控除 (課稅總 所得이 1,000 萬圓을 초과 하면 초과분 에 대하여는 5%稅額控除)
法人間의 配當	全額益金 산입 (기관投資者가 받는 上場法 人の 配當은 益金不算入)	①原則 : 85% 益金不算入 ②관련법인간 의 配當은 全額益金不 算入	全額 益金不 算入	個人株主와 同一함.	①原則 : 개인 株주와 同 一함. ②子會社에서 받은 配當 에 대해서 는 受入配 當에 그의 1/2을 가산 한 金額의 5%를 益金 算入	①原則 : 全額 益金不算入 ②受入配當이 지불배당을 초과하는 部分은 75 %益金不算 入

○ 韓國의 非上場法人은 留保所得의 50%를 配當으로 看做, 綜合所得稅 課稅

資料 : ① 小松芳明, 各國의 租稅制度, 1980年.

② 日本 財政金融統計月報, 1980, 8月號.

法人稅와 配當의 受取法人의 法人稅間의 세부담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法人稅를 株式의 保有나 企業의 경영형태에 대해 中立的으로 하게 할 수가 있다.

(2) 紙上配當稅의 폐지

非公開企業에 대한 紙上配當稅制는 비록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다. 紙上配當稅는 法人과 個人所得에서 역시 二重課稅가 문제가 되고 있고, 資金의 内部留保와 再投資를 滞害하는 기본요인이 되고 있다. 즉 非公開法人의 경우 紙上配當稅制度는 實제 배당을 유도하여 社內留保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納稅後 課稅所得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紙上配當課稅範圍로 하며 이를 다시 綜合課稅하게 되므로 法人에게는 社內留保할 餘力이 없게 되고, 株主로서는 再投資할 資金餘力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도 法人段階에서의 配當의 擬制와 株主에 대한 未實現所得에 대한 二重課稅에 대해 이 制度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가 支配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가 이를 과감하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法人の 留保所得에 대해 課稅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株式을 양도하게 되면 현재에는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課稅裝置가 없기 때문에所得이 漏脫된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紙上配當稅制의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문제이외에도 計算公式 자체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每決算期마다 行政的인 마찰이 생겨 納稅者와 課稅者雙方間に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紙上配當稅制를 폐지하는데 따라 稅收結함을 우려한다면 政府가 택할 方案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행 所得稅法上의 양도소득세 규정에 “資產 등의”라는 개념안에 非上場株式의 양도소득률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을 침수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同條 第1項의 양도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實用化되지 못할 뿐이다(所·令 第44條의 2). 따라서 이 비율을 내리고, 株式양도시에 稅源捕捉을 위하여 非上場株式에 대한 稅務申告를 규정해 놓는다면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租稅債權을 早期에 확보하지 못하는 有名無實한 규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企業의 成長期에는 内部留保에 도움을 받으나 쇠퇴기에는 内部留保를 감식하게 되므로 막상 株式을 양도할 때에는所得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實效稅率을 낮추어서 영업활동을 伸張시켜 결과적으로 法人稅의 稅收를 증가시키는 效果를 얻게 된다면 相殺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主張이 강할 경우에 두번째 方案으로서는 法人稅의 課稅時에 留保分과 配當分을 區別하며 差等課稅하는 方式을 생각해 볼 수 있다(<表 3> 參照). 西獨이나 日本이 이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留保分에 대한 稅率을 配當分에 대한 稅率보다 높게 課稅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稅制의 개선이 納稅者를 보호하는 한편 稅收를 증대시키는 二重目標를 노리는 것이라면 마찰이 많은 紙上配當稅制는 철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公開法人에 대한 우대조치 持續

현재의 稅制構想은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의 差等을 축소시켜 租稅의 中立性을 확보한다

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公開法人은 大企業이며, 實質公開法人보다 僞裝公開法人이 많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公開要件確認에 租稅行政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大企業이 公開한 것은 아니며, 僞裝公開 여부는 證券監督院이나 證券去來所에서 確認하여 管理포스트에 넣기 때문에 國稅廳에서 二重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公開企業이 社會的인 責任을 자각하여 自發的으로 公開하지 않는 한 公開誘因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公開企業은 公開企業으로서의 資格을 유지하기 위해 社會的費用을 소비하고 있다. 公開를 하는 이유는 첫째가 資本市場에서 資本調達을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과거의 稅制上의 혜택 때문에였다고 할 수 있다.

資本市場 특히 證券市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需要와 供給이 충족될 수 있는 많은 上場企業과 資金動員ability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證券市場의 實質的인 脆弱性도 長期的인 政策目標의 混亂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政策金融의 低利子로 資本調達이 가능한 한 證券市場에서의 資本調達을企業은 가능한 한 기피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證券市場은 70년대 말의 침체기에도 金融調達面에서 一般金融市場의 1/4을 占有하고 있다. 自律的인 經濟體制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資金의 效率的인 配分을 담당하고 있는 證券市場을 계속 육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證券市場의 去來對象인 公開企業을 증대시켜야 하며, 公開企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稅制上의 誘因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公開企業이 대폭 증가되고, 證券市場이 金融市場의 中樞的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에 公開企業의 稅制上의 우대는 철회되어도 좋을 것이다.

企業公示를 전혀 하지 않는 非公開企業과 公開企業의 差等은 당연한 것이며 稅務行政面에서도 申告納稅制度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企業公開는 계속 유도되고, 企業에 대한 情報의 公開는 社會의 監視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행수준의 公開企業에 대한 우대는 持續되어도 좋다고 생각된다.

5. 企業會計의 존중

國稅基本法 第20條에는 納稅義務者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企業會計의 基準이나 慣行을 尊重하게 되어 있으며, 但書로서 稅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除外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行 稅法은 脱稅의 防止와 租稅의 權利를 早期에 확보한다는 名目下에 계속 企業會計와 相衝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는 더욱 擴大되고 있다.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에 있어서 永久的인 差異가 생기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期間의 差異가 생기는 部分은 加貸적이면 企業會計를 따라 再修正하는 번거로움을 적게 해야 한다.

(1) 損益의 歸屬年度에 대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一致

法人稅 課稅標準을 계산함에 있어서 稅法과 企業會計의 認識基準이 달라 번잡한 稅務調整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에 따라 租稅行政上 복잡한 문제が 생긴다. 法・法 第17條 ②에 의하면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규정 때문에 所有權 移轉前에 納稅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法・法 第17條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는 損益의 歸屬事業年度를 企業會計原則에 의거하게 하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法定期限內에 정부에 신고하게 하면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가 어느 정도 좁혀 질 수 있으며 納稅者의 不平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

法・令 第57條의 경우에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에 대한 정의가 대체로 있으나 실제慣行으로는 一定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資本的 支出로 處理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一時的인 稅收가 確保되기는 하나, 外國投資企業 또는 合作企業의 경우에 資本의 支出로 計上하여 생긴 利益을 法人稅 減免期間 동안 流出하고, 減價償却期間 이전에 철수할 경우에 과대평가분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 矛盾을 안고 있다. 이것은 企業會計의慣行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外換差損益의 評價

또한 1980年에 급격한 換率引上으로 많은 企業에서 巨額의 換差損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稅法의 處理規程이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규정이나 企業會計原則과 相衝되었고, 法人稅法에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法人稅法에 규정하고, 그 내용은 企業會計原則과 一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法・令에만 규정되어 있고, 法・法에는 없음).

(4) 固定資產 取得에 대한 過大評價의 抑制

現行稅法에 의하면 法인이 借入金으로 建設을 한 경우 그 支給利子는 損金에 不算入하고 借入金 용도가 建設에 소용되었는지 不分明하더라도 一定公式에 의해 계산된 支給利子를 損金에 不算入하게 되어 있다(法・法 第16條 第11號, 法・令 第33條 ①~⑥, 法・則 第12條). 이에 따라 損金으로 인정되어야 할 運營費에 관계된 支給利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取得한 固定資產이 실제보다 過大評價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建設에 직접 使用된 長期借入金에 대하여 그 資產의 取得完了時까지 발생한 支給利子만 建設原價에 반영하게 해야 할 것이다.

6. 法制定 精神에 맞춘 法規의 合理的 運用

法人稅法을 制定 또는 改正할 당시에 생각되었던 理念이 현실을 무시한 규정의 내용이나 또는 현실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當初의 法制定 趣旨대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當初의 法制定 趣旨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合理的으로 改正 또는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1) 外國納付稅額에 대한 稅額控除制度의 改善

法・法 第24條의 3의 규정에 의하면 法制定趣旨는 外國納付稅額에 대한 稅額控除를 하는 것이나 同條文上에 課稅標準金額에 國外源泉所得이 包含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國外源泉所得에 대한 外國納付稅額만 인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外國에서 事業을 하는 과정에서 外國納付稅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外源泉所得이 損失 때문에 發生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控除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各事業年度의 所得額計算上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個人事業을 法人으로 轉換할 때의 讓渡所得稅의 免稅

本項은 所得稅法에 관계되는 것이나 中小企業이 영위하는 居住者가 事業用 資產을 現物出資하여 法人을 설립하는 경우에 現物出資에 따라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租稅減免規制法 第3條의 3, ⑭).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法人的 出資額은 과거의 中小企業 出資額의 150%가 되어야 하므로(同條의 3, ⑯) 資金이 부족한 中小企業은 法人 轉換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防衛稅가一般的 경우보다 50% 重課되어 實質적으로 法人轉換을 막는 條項이 되고 있다. 同條項이 個人事業을 法人으로 轉換을 유도하는 條項이라면 中小企業 出資額의 1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條項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3) 退職給與充當金 損金算入制度의 改善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制度는(法・法 第13條) 同法・令 第18條 ③에 退職給與充當金의 누적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使用人の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退職給與로 지급되어야 할 金額의 推計額의 100분의 50을 限度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推計額과 退職給與充當金 設定額 사이에 不足額이 있으면 法人이 團體退職保險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이를 損金으로 인정하는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社外에 退職給與充當金을 설정하는 이유는 會社가 만약 망했을 경우라도 종업원

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自己資金으로團體退職保險을 불입할 능력이 없는企業들은保險會社로부터團體退職保險에 불입할 금액을 대출 받는데, 이들이擔保로 하는 것은 바로團體退職保險이기 때문에 막상會社가 망할 경우에 종업원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利子支給이나 기타社會的費用이 증가하는 부조리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退職保險料의 損金算入規程을 폐지하는 대신退職保險充當金에 이들限度를 포함시켜 설정하게 하는 것이 보다 요청된다고 하겠다.

7. 從業員의 福利厚生 増進

1970年代에 從業員들에 대한 労使關係 문제의 발생으로企業은 從業員들의 福利厚生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國民福祉政策의 一環으로 從業員에 대한 福祉厚生問題를 개선할 수 있게끔 稅制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從業員 福利厚生支援에 대한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法·令 第43條의 勤勞所得의 범위에 의하면 ⑪, ⑫에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食事代와 被服費까지 勤勞所得에 속하는 바企業에 따라서는 必須不可缺少하게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被服: 방사선 방어복, 實驗服 등) 이에 대하여一律的으로 높은 甲勤稅率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저렴하게 이를 제공하였을 경우 不當行爲로 計算되어 損金否認이 되어 마찰을 빚고 있는 바이는 勞動條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勤勞所得에는 포괄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法·法 第20條).

또한 從業員의 厚生福祉施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厚生福祉施設에는 工場設備에 준한 特別償却制度(法·令 第51條의 기준에 맞추어 特別償却을 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종업원 복지시설도 같이 운용되므로 減價償却範圍額의 20%를 加算하는 方式)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현재 이에 관한 규정은 없음).

8. 景氣變動에 대응한 稅制

納期延長申請은 國稅基本法에 따라 火災 및 納稅者가 그事業에 심한 손해를 입은 때에 가능한 바(國稅基本法 第6條), 國稅徵收法에서는 6月에서 9月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國稅徵收法 第15條). 그러나 과거의 녹색신고법인제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1980年 12月 31日에 法·法 第30條 ④와 法·令 第90條의 法人稅 分納 許容制度가 없어

졌다.

(1) 法人稅 分納 許容

現行 法人稅申告納付規程에 法人이 납부할 방위세액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分納할 수 있도록 法條文을 신설해야 한다.

(2) 法人稅 中間 豫納期限의 연장

法・法 第30條 ①에는 中間豫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中間豫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간예납을 申告・納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中間豫納을 위한 半期決算이 실제로 年末決算이나 거의 같은 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납부금액을 성실하게 計算할 수 없다. 따라서 中間豫納期限을 中間豫納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稅法改正이 필요하다.

그리고 法人稅의 延納制는 景氣에 따라 法人稅의 稅收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不景氣時には 企業의 資金負擔을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納付유예를 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곧 租稅의 景氣對應機能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租稅統計上으로도 所得稅는 景氣에 非彈力의이나 法人稅는 景氣變動에 매우 彈力의이다).

9. 結論

지금까지 7가지의 方向에서 企業에 관련된 稅制를 중심으로 改正方向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企業에 관련된 稅制 뿐만 아니라 全般的인 稅制運營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課稅의 公平化와 이를 納稅者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稅率構造가 복잡해지고, 租稅減免規制法의 條文이 많아질수록 당초에 의도했던 政策目標보다는 納稅者間に 느끼는 不公平性이 증대한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企業이 관련된 稅制는 稅收增大에만 努力하다가 「황금알을 넣는 거위」를 잡아 먹은 農夫의 愚를 犯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小數의 脱稅를 방지하는 규정과 「의심나는 곳에 課稅한다」는 稅制運營때문에 기업에 投資할 의욕을 잃게 했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현재의 企業關聯稅制가 企業의 内部留保나 投資意慾을 증대시켰다기 보다는 이를 抑制하고 있다는 一面도 課稅當局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좋은 稅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협한 해석이나 法制定趣旨를 망각한 稅制運營이 있다면 이는 現實的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해석의 확장한계에 대해 稅務公務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稅法이 모든 事項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인식해서 企業會計의 慣行이나 原則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稅務上의 마찰을 국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稅務行政의 번잡성이 줄어들고 納稅者에게 便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稅法이라는 테두리를 강조하다가 景氣變動에 대응하지 못해 稅收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短期的인 稅收 확보보다 長期的인 稅收의 極大化라는 방향으로 稅法을 彈力的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自進申告制度를 정착시키고, 각종 稅制를 納稅者를 보호하는 면에서 위의 本論에서 改正方向을 논의하였지만 이러한 稅制의 改正만으로 밝은 納稅風土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稅制改革뿐만 아니라 租稅行政의 改善도 고려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稅政當局의 組織과 人事管理의 改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稅務當局의 調査機能을 강화하고, 稅務公務員에 대한 教育을 강화하여 새로운 稅制와 그 運營에 대해서 이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納稅者를 啓導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稅制改革에 있어서도 部分的인 改正을 피하고, 全般的인 稅制均衡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계속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納稅者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納稅者를 계몽하는 것은 「거두어 들이기만 하는 政府」가 아니라 納稅者를 위해서 어떻게 아껴 쓰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納稅者에게 인식시키는 일일 것이다. 일을 하는 정부를 위하여 豊算의 增大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의 質과 量이 國民에게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納稅者는 協力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